

미국, 유럽, 한국 Crypto 규제 요약

I. 개별국가 Crypto 규제 비교: 미국, 유럽, 한국

규제체계 비교표				
		미국	유럽	한국
공통 프로세스	Crypto 법령 적용 프로세스	1. 증권형 여부 우선 판단 2. 증권에 속하지 아니한 Token/Coin에 대해 관련 법령의 적용		
증권형 토큰 규제	증권법령	Securities Act 1933 Securities exchange Act 1934	MiFID II - 금융상품법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MAR - 규제(권고) (Market Abuse Regulation)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3. 1. 1. 시행)
	증권의 범위	부분 포괄적 (Investment Contract)	부분 포괄적 (MiFID II에 열거된 내용)	부분 포괄적 (자사법 제 4조 2항 6호 투자계약증권)
	정부기관 개입수준	적극 (규제 관할기구 논쟁) CFTC. v. SEC.	연합 단위에서 적극 (개별 국가별 차이 有)	소극 (법적 근거 및 관할기구 논쟁)
Crypto 규제	Crypto 법령 (신설)	RFIA ¹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MiCa ² (권고)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Markets in Crypto-assets) (2024년 6월 시행 확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23. 4. 25.) (기 입안 19건 대안반영 폐기) ³
	명칭	Digital Asset (디지털 자산)	Crypto-Asset (암호자산)	가상자산
	Crypto의 분류	가상화폐 (Virtual Currency) 부수자산 (Ancillary Asset)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Payment Stablecoin)	유틸리티 토큰 (Utility Token) 자산준거토큰 (Asset Referenced Token) 전자화폐토큰 (E-money Token)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⁴ (CBDC 제외)
	유관 사업자 분류	디지털자산 거래소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부수자산 발행자	암호자산발행자 등 7종	가상자산업자

1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senate-bill/4356/text>

2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0PC0593>

3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A10005E0K6X1U1B3T2Y5U0V1T5Z0

4 환금성 없는 전자증표, 게임에서 취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선불지급수단,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은 제외

II. 미국: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RFIA)

Digital Asset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입법안			
법안명칭	책임있는 금융 혁신법 (RFIA)	디지털 상품 거래법 (DCEA)	디지털자산 시장 및 투자자 보호법 (MSIPA)
영문명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⁵	Digital Commodity Exchange Act ⁶	Digital Asset Market Structure and Investor Protection Act ⁷
제안일	'22. 6. 7.	'22. 4. 28.	'21. 7. 28.
제안자	상원의원 루미스(공화당) & 질리 브랜드(민주당)	하원의원 톰슨(민주당)	하원의원 베이어 (Beyer)
디지털자산 규제기관	CFTC	증권형 외 디지털자산	증권형 외 디지털자산
	SEC	증권	증권
디지털자산 거래소 규제 기관	CFTC 등록 방식 단, 의무사항 아님. ⁸ (기존 상품거래소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	CFTC 등록 방식 단, 의무사항 아님. (기존 상품거래소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	-
거래 가능 상품	현물 (파생상품 불가) ⁹	현물	-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업자 ¹⁰	고객 서비스 주요조건 공시	CFTC 자율등록 & 공시의무	-

※ 입법안 세건 중 책임있는 금융 혁신법(RFIA)이 규정하는 범위가 제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파트에서는 RFIA”만을 다루는 것으로 한다.

5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senate-bill/4356>

6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7614>

7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4741/text>

8 SEC. 404. (a) In General.—The Commodity Exchange Act (7 U.S.C. 1 et seq.) is amended by inserting after section 5h the following:

9 (3) PROHIBITION ON TRADING DERIVATIVES PRODUCTS.—Registration as a digital asset exchange shall not permit a trading facility to offer any contract of sale of a commodity for future delivery, option, or swap for trading without also being registered as a designated contract market or swap execution facility. (SEC. 5i. b. 3.)

10 선물거래법을 따라가므로 FTM(Future Commission Merchant)라 지칭한다.

디지털자산 정의 및 분류 요약		
대분류	중분류	내용
디지털 자산	공통사항	분산원장 혹은 유사한 기술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되는 경제적 권리
	가상화폐 (Virtual Currency)	“Section 5103”에 기재된 법정화폐의 종류가 아니며, “교환의 매개”, “가치의 단위”, “가치의 저장”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 부수자산 (Ancillary Asset)	Securities Act of 1933 Section 2(a)(1)에 따라, “투자계약의 거래구조” 형태로 공개 또는 판매된, “무형의”, “대체가능한” 자산 ※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공시규제권한을 가짐
	-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Payment Stablecoin)	(A, Backed) 미국 달러와 1:1 대응되는 것 (B, Legal tender) Section 5103에 따라 정의되어 있거나, 혹은 외국 특정 국가의 법령에 근거한 것. (C, Issuance) 특정한 사업체에 의해 발행된 것. (D, Redemption) (A)에 따른 발행자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할 것. (E, F, Collateral) 1개 또는 그 이상의 금융상품을 담보로 발행된 것으로 거래의 매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증권형 토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주체의 부채 또는 지분이 아닐 것. - 특정 주체의 청산권 - 특정 주체의 이자 또는 배당금 지급에 대한 권리 - 타 주체의 오롯한 경영/관리 노력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한 권리 - 상기 열거한 사항 외 특정 주체로부터 발생하는 부수적인 이익 	디지털 자산 중 좌측을 만족하는 경우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

III. 유럽: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Markets in Crypto-assets (MiCa)

MiCa 적용 대상 토큰 분류				
법안명칭	유틸리티토큰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	
성격	비금융목적/사업목적 토큰	두개 이상의 법정화폐나 상품을 담보로 발행한 토큰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토큰(신용기관 발행)	
관할기관	소속 국가	소속국가 유럽증권시장감독청	소속국가 유럽중앙은행	
발행	공통 발행사항	1. (주체) 인가 요청자는 유럽 내 본점 또는 지점을 위치한 법인 이어야 함. ※ 단, 발행자는 법인 또는 자연인일 수 있음 . 2. (기술) 분산원장 을 사용하여야 함. 3. (KYC/AML)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4. (조세) 지정된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두지 말아야 함.		
	백서 발행 의무	있음	있음	있음
	인가 의무	있음	있음	있음
	백서 & 인가 예외	1. 기 발행된 경우 2. 발행자 대상 사용만 가능 (발행자 외 교환 불가) 3. 공개 이후 1,000,000 미만 모금	1. 신용기관 인가를 받은 경우 2. 12개월 일 가중평균 5,000,000 미만 모금	1. 신용기관 인가를 받은 경우 2. 전자화폐 요건 충족시 3. 12개월 일 가중평균 5,000,000 유로 미만 모금
	인가 효과	공통	1. 암호자산 공개(Initial Offering) 2. 암호자산거래소 거래 승인	
		개별	- 발행일로부터 12개월 모집가능 - 공개기한 종료 14일 전 결과 공개	지속 모집 가능
운영	공통 운영사항	1. (소비자 보호) 발행 이후 소비자 보호 법률의 적용 2. (손해배상) 백서 기재사항과 다른 운영으로 인한 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발생 - 백서상 면책 기재사항은 유효하지 않음.		
	개별 운영사항	백서 변경이 발생할 경우, "영업일 7일 전" 웹사이트 및 관계당국에 통지	1. 발행자 및 암호자산사업자에 의해 이자가 지급되어서는 안 됨. 2. 중요 감독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음. 3. 준비자산을 변동성이 낮은 안전자산 위주로 운영하여야 함.	공시의무 (3개월) 지배구조 (20%) 커스터디 사용 자산 운용조건 중앙기관 보고 3개 조건 만족시 중요
중단	사업자에 준하는 사업 중단	- 인가승인 요건 미충족 - 불법행위시 - 도산법에 따른 업무축소 - 운영중단의 결정 - 통화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신용기관 인가 상실 - Directive 2009/110/EC	

1) 증권형 토큰의 경우, 분산원장을 사용한 금융투자상품으로 금융법 규제를 받으므로 기재하지 않음
 2) 기 탈중앙화 된 토큰이나 증권성을 가지지 않은 NFT는 본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기재하지 않음.

MiCa 적용대상 사업자 분류		
	암호자산 서비스 유형	최소 자본금
주요감독기구	1차: 관계당국 2차: 유럽증권시장감독청	
분류 1	제3자 대행 암호자산 거래	50,000유로
	암호자산 자문 제공	
	암호자산 사모발행	
분류 2	커스터디 서비스	125,000유로
분류 3	암호자산과 법화 간 교환	150,000유로
	암호자산간 교환	
	암호자산거래 플랫폼	

※ 자본금 수준에 따라 중복 적용 (예시: 분류2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분류 1을 수행할 수 있음)

사업자 분류 인가 절차		
인가의 절차		
인가신청	신청자 ↓ 관계당국 유럽증권시장감독청	(식별) 인가 신청을 위해서 신청자는 다음의 세부사항을 중앙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 2. 신청자의 법적 지위 3. 신청자의 정관 4. 암호자산서비스 유형에 따른 운영계획 5. 지배구조체계에 대한 설명 6. 내부통제 매커니즘 7. 조세회피/자금세탁 위험국에 본점 혹은 지배주주가 있지 않다는 여부
인가 신청 평가 승인 & 거절	관계당국 유럽증권시장감독청 ↓ 신청자	(평가) 인가 신청 접수 후 2개월 이내 인가승인여부 회신 (등록) 승인시 관계당국은 유럽증권시장감독청에 인가 여부 통지 (승인거절) 평가 후 필요 서류가 없을 시 인가 거절 가능

MiCa에 따른 금융당국 규제권한			
	(개별국가) 관계당국	유럽증권시장감독청	유럽중앙은행
유틸리티토큰	(사후관리) 검사, 제재	모니터링	모니터링
자산준거토큰	인가, 검사, 제재	인가 평가 등 사무 수행	인가 거부 인가 취소 요구 감시
암호자산서비스		모니터링	모니터링
전자화폐토큰	검사, 제재	모니터링	인가, 감독권한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의 운영의무 (공통)	
	(개별국가) 관계당국
건전성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구최소자본 금액 유지 ● 전년도 고정간접비의 1/4 ●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계약기간이 1년 이하일 것 - 취소통지기간이 최소 90일일 것 - 유럽연합에서 운영중인 보험회사의 상품일 것 - 당 보험사가 특수이해관계가 없을 것
기관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실제 운영자가 의결권의 5% 이상을 “지속적이고”,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함. ● 운영을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직원을 고용해야한다.
고객확인(KYC/AM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 것 ● 조세회피/자금세탁 고위험국이 사업운영법인을 지배할 수 없도록 할 것.¹¹
암호자산 자금의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호자산서비스 이용자는 고객의 자금을 신용기관 혹은 중앙은행에 전액 예치할 것.

11 Directive (EU) 2015/849에 해당하는 국가를 말한다.

IV. 한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법률안 진행과정			
쟁점사항	'21년 11월 17일 정무회의	'23년 3월 28일 정무회의	'23년 4월 25일 정무회의 (확정안)
단계별 입법 여부 및 별도 제정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산업에 대한 “일반 규제 배제 합의” - 가상자산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독립되어 입법하되,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제한적 입법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 입법 방식으로 합의 (윤창현 위원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거래법,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처벌 ▪ 2단계: 영업행위 일반, 상장, 발행 (Life Cycle) 	
가상자산 용어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금법에 가상자산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통일성을 위해 가상자산의 개념 지속사용” - 특금법상 가상자산 개념에 DEFI, NFT, 일부 유틸리티 토큰이 배제되어 있으므로, “법상 별도 규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금법상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이미 사용하므로 일관성을 위해 “가상자산 개념 지속 사용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금법상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이미 사용하므로 일관성을 위해 “가상자산 개념 지속 사용 합의” - 가상자산의 정의에서 “CBDC의 경우에는 가상자산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명시 문구 포함”
CBDC 제외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DC는 법정화폐의 발행방법에 불과하므로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이용우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DC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지 않을 경우 오해가능성 있음. (금융위 김소영) - 2단계 입법으로 가닥을 잡았으므로 2단계 시점에 입법하면 됨. (윤창현 위원) 	
거래소 기록 보존 쟁점	쟁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 및 증여세” 제척기간을 고려하여 15년 보관의무 (이용우 위원)
집단 소송 도입	쟁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은 있으나 가상자산 관련 집단 소송법은 없으므로 이에 신설 (오기형 위원)
처벌 관련 규정 (불공정거래)	쟁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공개정보이용 - 시세조종 - 정보이용형 부정거래 - 시세관여형 부정거래 ● 처벌: 과징금 및 손해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합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 거래소 내 시세조작 등 이상거래 탐지의무 - DAXA를 경유한 “내부통제제도”를 통한 통제 (코인원 등)
위원회 설립여부	쟁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조사단 33명, 금융감독원 조사 부문 77명 시장감시위원회 120명을 통한 불공정행위 규율 난점 존재 (수석위원 이용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자산 정책자문, 권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가상자산정책자문위원회 설립 (2단계 대비) (이용우 위원)

한국은행. (2022. 12.).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p.95

가상자산 및 전자금융 관련 의원입법안 진입규제

	민병덕	민형배	김은혜	윤창현	권은희	양경숙
법안	가상자산 특별법 제정안					
용어	디지털자산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가상자산	가상자산	가상자산
인가/등록 기관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산하(7명)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영업유형	디지털자산금융사업	디지털자산사업	가상자산사업	가상자산사업	가상자산거래업	가상자산업
영업유형	가. 매도·매수 나. 디지털자산으로 타 자산과 매매 다. 디지털자산 교환 라. 보관 또는 관리 마. 가족·나속 중개, 알선 대행 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 매도·매수 나. 디지털자산 교환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천 리. 보관 또는 관리 마. 가족·나속 중개, 알선 대행 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 매도·매수 나. 가상자산 교환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천 리. 보관 또는 관리 마. 가족·나속 중개, 알선 대행 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 발행 나. 매도·매수 다. 가상자산 교환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천 마. 보관 또는 관리 바. 가족·나속 중개, 알선 대행	가상자산의 매매를 위한 시장 개설 및 운영	가. 발행 나. 매매 교환 등을 중개 알선 다. 보관 관리 라. 보관 관리 및 이천 서비스 등 마.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인가	디지털자산금융사업	-	가상자산사업	가상자산사업	가상자산거래업	가상자산업
등록	디지털자산 발행	디지털자산사업 영위	가상자산 발행	가상자산 발행	-	-
신고	-	-	-	-	-	-
자본금 요건	1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3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가. 가상자산거래업 3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가상자산보관관리업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 : 2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 가상자산발행업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안	김병욱 이용우		박용진 강민국 배진교 정희용			
법안	가상자산 특별법 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용어	가상자산	가상자산	가상통화	가상자산	가상자산	가상자산
인가/등록 기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영업유형	가상자산업	가상자산사업	가상통화취급업	가상자산취급업	가상자산사업	가상자산업
영업유형	가. 매도·매수 나. 가상자산 교환 다. 고액의 요청에 따른 가상자산 이천 라. 보관 또는 관리 마. 발행 바. 가족·나속 중개, 알선 대행 사.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 매도·매수 나. 가상자산 교환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천 리. 보관 또는 관리 마. 가족·나속 중개, 알선 대행 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 매매·구입·판매 대행, 구입 권유 포함) 나. 가상통화의 매매를 위한 시장 개설, 운영 다. 매매 중개, 알선 라. 발행, 가상통화의 생성, 채제 또는 거래체계를 만드는 행위 마. 보관 관리 바. 보관 관리	가. 발행 나. 매도·매수 다. 가상자산 교환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천 마. 매매 교환 등의 중개, 알선 대행 바. 보관 또는 관리 사.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 매도·매수 나. 가상자산 교환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천 리. 보관 또는 관리 마. 가족·나속 중개, 알선 대행 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 발행 나. 매도·매수 다. 가상자산 교환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천 리. 보관 또는 관리 마. 가족·나속 중개, 알선 대행 사.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인가	-	가상자산거래업	가상통화취급업	가상자산취급업	가상자산사업	가상자산지갑업 외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가상자산거래업, 가상자산보관관리업	가상자산보관관리업,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	-	가상자산발행업, 가상자산관리업	-	-
신고	일반적 가상자산업	-	-	-	-	가상자산지갑업
자본금 요건	가상자산거래업 및 가상자산보관관리업 :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가. 가상자산거래업 :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나. 보관관리업,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 : 등록업무 단위별로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가. 가상자산취급업 :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나. 가상자산발행업, 가상자산관리업 :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본 글은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한다. 본 글의 내용과 자료는 법률, 세무, 투자금융을 비롯한 어떠한 형태의 자문으로 해석/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